

1. 개정이유

우리 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고시·운영 중으로, 규제 완화 요구 등에 따라 제도운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본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 제한 기간에 따른 감점 규정 삭제(안 별표 1, 별표 2, 부표 4.①)
- 나. 신용도 평가 시 별점 평가대상 및 산정방식 명확화(안 별표 1, 별표 2, 부표 4.②)
- 다. 자구 수정(제3조, 제13조, 부표 1.①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「**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**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”를 “「**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**」”으로, “**2017년 7월 1일**”을 “**2024년 7월 1일**”로 한다.

별표 1의 신용도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평가항목	배점	항목별 세부평가기준
신용도	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정지 등 제한 1개월마다 0.2점씩 감점 • 벌점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

별표 2의 신용도의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(7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평가항목	배점	항목별 세부평가기준								
신용도	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정지 등 제한 1개월마다 0.2점씩 감점 • 벌점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					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(회사채의 경우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A- 이상</td> <td>BBB- 이상</td> <td>B- 이상</td> <td>CCC+ 이하</td> <td>미제출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2.7</td> <td>2.4</td> <td>2.1</td> <td>1.8</td> </tr> </table>	A- 이상	BBB- 이상	B- 이상	CCC+ 이하	미제출	3	2.7	2.4
A- 이상	BBB- 이상	B- 이상	CCC+ 이하	미제출						
3	2.7	2.4	2.1	1.8						

부표 1. 담당건축사, 참여건축사(보)의 경력 및 실적 제1항 중 “입찰참가 제한”을 “업무정지 등 제한”으로 한다.

부표 4. 신용도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업무정지 등 제한은 업체, 담당건축사, 참여건축사(보)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,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.

부표 4. 신용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, 담당건축사, 참여건축사(보)가 「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도 평가항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, 별표 2, 부표의 신용도 평가항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) ① (생략)</p> <p>제1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 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7년 7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제13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----- ----- ----- <u>2024년 7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